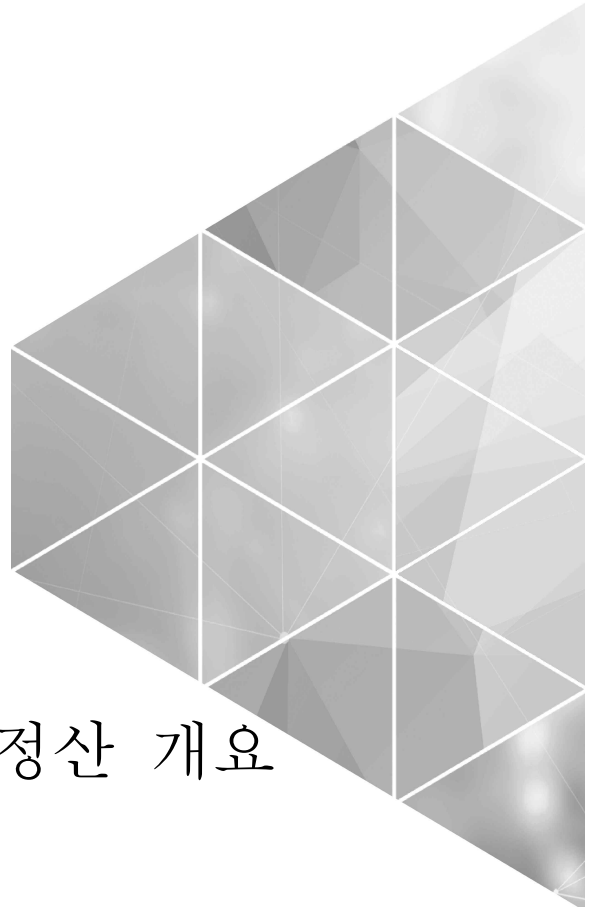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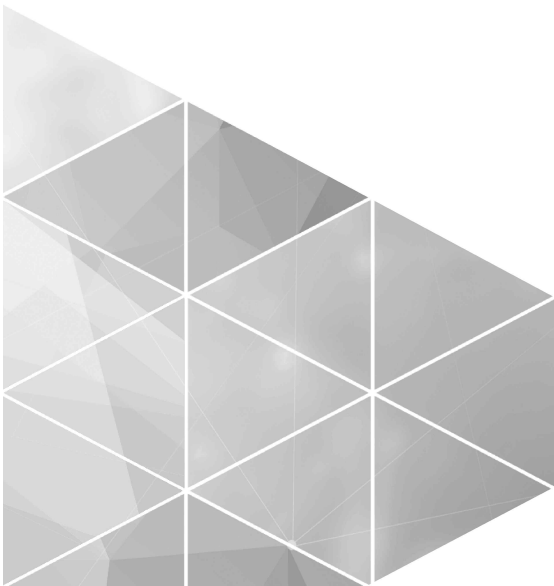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1
1.1 목 적	3
1.2 수행근거 및 범위	3
1.3 수행 절차	4
제2장.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7
2.1 정산 범위	9
2.2 정산 기준	9
2.3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13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방법	19
3.1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지자체 작성)	21
3.2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최적화추진단 작성)	25
3.3 국고보조금 심사·확정(유역(지방)환경청 작성)	30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34
제4장. Q&A	37
제5장. 서 식	59
붙임 자료	6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제1장 국고보조금 정산 개요

1.1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산 관리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타 용도 사용되는 것을 방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보조사업자와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절차 시행으로 정산 및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 도모

1.2 수행 근거 및 범위

1.2.1 수행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0.1,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및 제13조(기술진단) 등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회계의 세출) 등
- 「건설기술 진흥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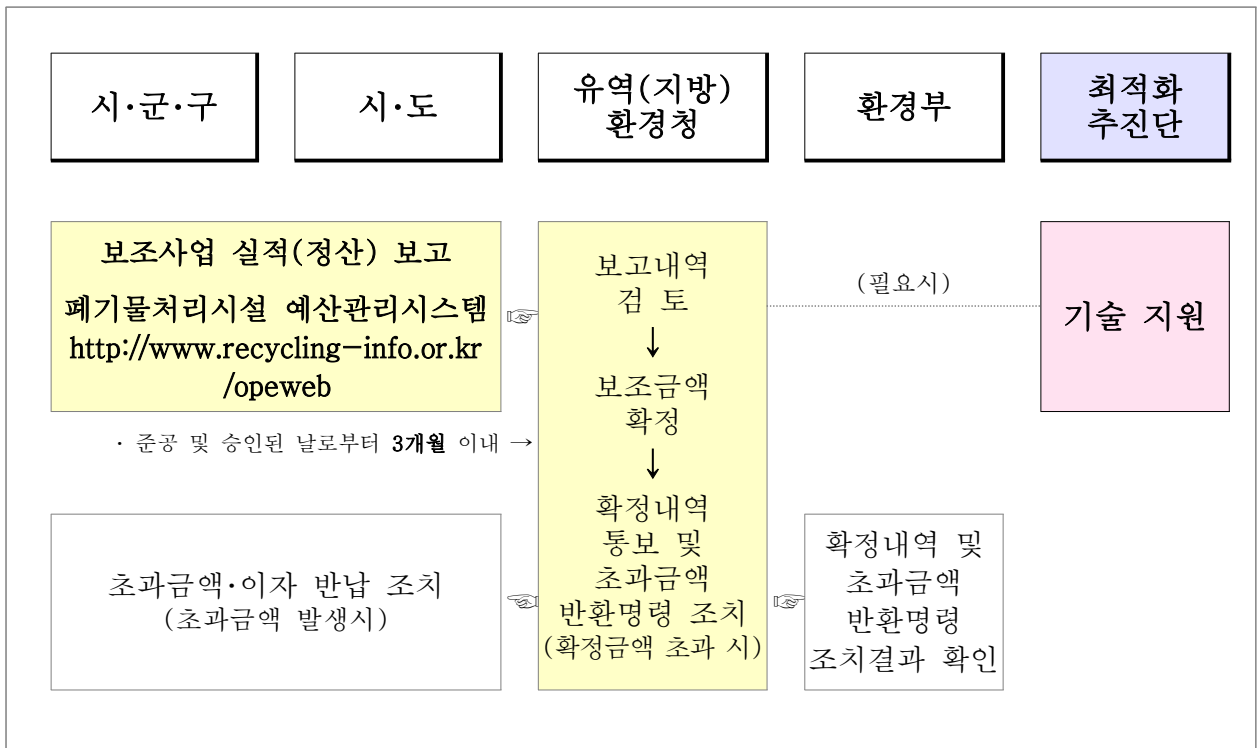
※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른다.

1.2.2 수행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1.3 수행 절차

□ 기관별 정산보고 및 검토 절차



1.3.1 시·군·구 지자체(보조사업 실적보고)

- 보고대상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사업
- 제출기한 : 준공 및 폐지승인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자는 제출서식(실적(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정산검토 필요자료 등) 제출 및 폐기물처리시설 예산관리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에도 입력
(참조.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심사·확정서 조회방법)

- 정산 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변경 시 페널티 부과

※ 단, 자원화시설(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1.3.2 유역(지방)환경청(실적·정산 검토)

-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발생이자 등)를 주관하며, 필요 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1.3.3 최적화 추진단(기술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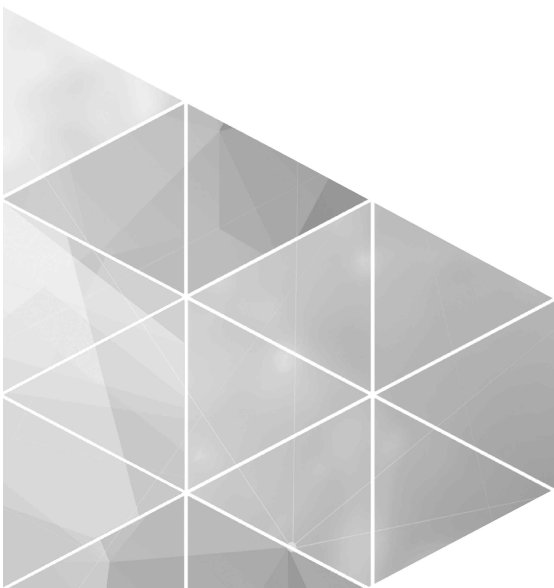
- 최적화추진단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술검토 요청을 받을 시 기술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

유역(지방)환경청	최적화추진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공사비 2. 폐기물처리비 3. 관급자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시설부대비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용지보상비 8. 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대해 보조금 목적외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 검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변경)관련 서류 - 설계변경 관련 문서 및 조건 -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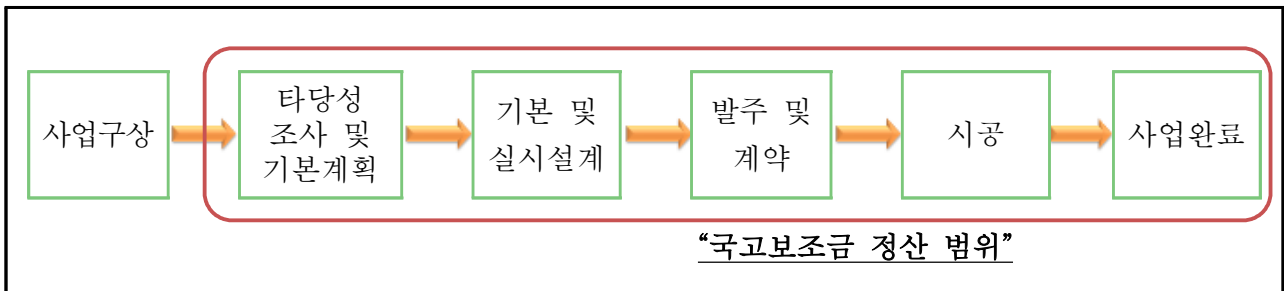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제2장 국고보조금 사업단계별 정산범위 및 기준

2.1 정산 범위

2.1.1 사업단계별 정산 범위



2.2 정산 기준

2.2.1 집행내역별 정산인정 대상

- 공사비, 관급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장비구입비, 공사 과정에서 시행한 측량비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각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 이내
-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 피해영향조사비·지하안전영향평가비·장외영향평가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개발훼손부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비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준공까지의 금액만 인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비용

- 공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의 위탁수수료
- 설치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시설관련 심의위원, **암판정위원, 기술평가위원 등의 출장비, 수당 및 제경비**
-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2.2.2 집행내역별 정산 제외 대상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사전예산협의, 재원협의 시 지원제외 비용)
- 장비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용지(보상)비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접보상비와 토지 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간접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기 **촉탁수수료** 등)
- 목적에 맞지 않는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굴착선별 후 이적)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지자체 직접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불인정(다만, 선별토사 재사용을 위한 운반비용은 인정)**
-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비, 사업대상부지 외 진입도로, 주민친화시설(정자, 파고라 등)
- 관련규정, 지침 등에 의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 등 (주민지원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 원인자부담금 : 「폐촉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아 당해 사업비로 충당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불인정(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 부대비용, 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매입세액불공제액 등)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총사업비를 초과(공사비의 10%이내) 할 수 없으며, 사업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 국고보조사업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체상금 (반환된 지체상금은 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정산)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편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법이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기준 외에 환경부와 협의 없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구분	정산 인정대상	정산 불인정대상	
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공사 선금, 기성금, 준공금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물가변동 포함)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비 ○ 장비 구입비(공정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지체상금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선별 후 발생하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위탁처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과정에서 시행한 측량비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제61조(공사비의정의)②항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 ※시설부대경비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조사용역비 등)에는 제외한다. ○ 입지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설계VE, 원가계산 검토 ○ 설치 검사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 	
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보상비:토지비, 이주대책비·정착금 등 ○ 간접보상비:분할측량비, 감정평가비, 권리이전비, 지장물 이설 및 보상업무 부대경비 등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보상비(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 설계비 요율 초과분
	감리비	○ 책임·시공·검측 감리비	○ 감리비 요율 초과분
	시설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맞는 감독관의 국내 여비 ○ 감독관의 안전 용품비 ○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조달 수수료, 설계VE 수수료 등 공사 관련 수수료 ○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출장비, 사무 용품비 ○ 민원관련 비용(변호사 비용 등) ○ 착공 및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운영에 관련된 공고료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등 ○ 시설부대비 요율 초과분 ○ 폐기물 처분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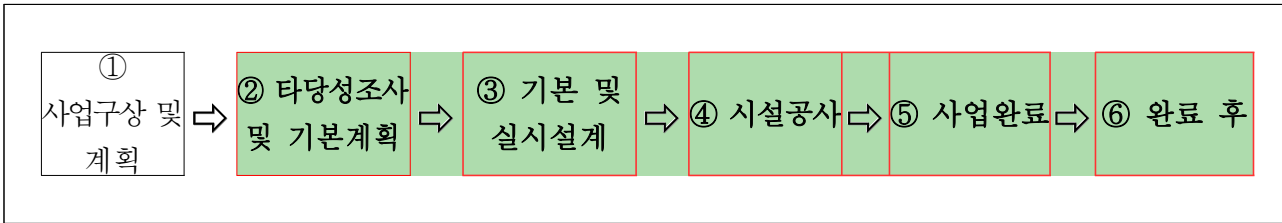
2.2.4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 총사업비 승인문서 ○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재원협의 검토결과서 ○ 지출결의서 :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 	<p>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p> <p>*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p>
공사 및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정산확인서 :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 ○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p>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관급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 물품검수조서 :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 계약서, 물품검수조서 대체 인정 자료 ①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② 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시설 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 구입비(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민간 투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 및 준공 채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지출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2.3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 사업단계별 정산에 필요한 서류(자료)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3.1 사업구상 및 계획 단계

- 해당사업의 개요 :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방식, 총사업비 등
 - 턴키방식, 대안입찰 방식, 기술제안 방식, 기타공사, 민간투자사업 등
- 총사업비 국고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연도별)
 - 환경부(시·도)에서 송부된 문서로서 국고교부액, 보조율(%), 시설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 자료
-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문서
 -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인 경우 물가변동 관련 자료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지서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납부금액(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 사전예산협의, 예산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반영
 -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납부계획서, 납부대장, 고지서, 통장사본 등)

2.3.2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단계

2.3.2.1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2.2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용역

- 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시설물의 배치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적합한 공법(처리방법) 선정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보고서

2.3.3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

2.3.3.1 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사업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배치계획 및 적용기술에 대한 검토 등
- 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 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의 설계에 소요
 - 기본설계비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방식, 대안입찰방식, 민간투자사업 등의 설계보상비
 - **【붙임4】** 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준공내역서

2.3.3.2 실시설계

-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인 기본설계와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할 경우(예 :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요율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요율 이내로 집행
 - **【붙임4】** 시설부대경비의 요율이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2.3.3.3 기타용역

○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용역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폐기물처리용역

- 해당 사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전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결정 등의 용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 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2.3.4 시설공사 단계

2.3.4.1 시설공사

○ 시설별 검토사항

구 분	주요검토사항	비 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변경 내역의 타당성 - 사업부지 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정산에서 제외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정산 인정내역으로 함) - 사업내용(신설, 대보수, 증설) 및 시설용량(설치단가 등), 처리방법 	
소각시설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폐촉법 제20조) 	
그 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익시설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폐촉법 제2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 	
비위생매립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공사 실시 여부(사용종료 매립지 조경공사는 제외) 	
선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장비가 공정의 일부인지 여부 	

※ 조경공사는 주민편익시설 공사와는 별도 공사내역으로 관리(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참조)하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정산제외 대상.

－ 제출서류

-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제출(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서류 첨부), 준공보고서(참고자료), 준공내역서
- 준공검수 조서, 지출결의서(전체)
- 정산 합의서, 준공사진(시설 전체 사진 1매)
-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감독자의 설계변경 보고서 제출

2.3.4.2 관급자재

- 제출서류 : 자재별 계약서,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납입고지서(계약금액과 지출결의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

2.3.4.3 장비 구입비

-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 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제출서류 : 계약서, 지출결의서

※ 공정의 일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중 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2.3.4.4 (책임)감리용역

- 공사의 건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으로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률, 준공도 검토 등을 수행

－ 【붙임4】 시설부대경비의 요율내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임.

－ 제출서류 : 최종계약서, 준공 검수조서, 지출결의서(전체), 최종 감리보고서

2.3.4.5 공공기관 대행

- 공공기관에서 사업 대행할 경우 ‘감리비(위탁사업비)’로 분류하고 위탁대행기관의 위탁수수료율(%)에 따라 집행

－ 대행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최종 위·수탁 협약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지출결의서

2.3.4.6 시설부대비

○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출장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감독원, 공무원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함
- 국내여비를 정산대상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국고 확정 전 집행된 여비는 정산에서 제외
- 출장여비 만을 인정대상으로 하며 오찬비용 등의 업무추진비는 제외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출장목적 확인가능 해야 함), 출장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는 증빙 서류(여비 지급명세서 등)를 별도로 제출

－ 설계 등의 사업관련 심의 비용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등

－ 감독관의 체재비 및 피복비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 조달청 계약 수수료, 공공요금 등

- 제출서류 : 지출결의서, 고지서 등

※ 사무용품 구입비(컴퓨터 등 집기류 포함), 착공식 및 준공식 관련비용, 운영 준비에 관련된 비용,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대비 등은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

2.3.5 사업완료

2.3.5.1 사업완료

○ 시설설치검사

- －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 감량화, 혐기성분해, 부숙토 생산 등)은 사업완료 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 시설설치검사 수수료는 **【붙임5】**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 － 제출서류 : 설치검사 결과서, 지출결의서

2.3.5.2 사업비 집행내역

○ 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

- 지자체가 다수의 사업이 동일기간 동시 추진되었을 때 일부 혹은 전체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위탁대행인 경우 대행기관의 편성내역 확인
- 낙찰차액을 예산내역(대상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제외
- 제출서류 : 세입세출예산서(사업기간 전체)

2.3.6 사업완료 후(사업취소 포함)

2.3.6.1 사업비·이자

- 연도별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취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결정이 취소 또는 정산결과 국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고 이때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비계좌 내역(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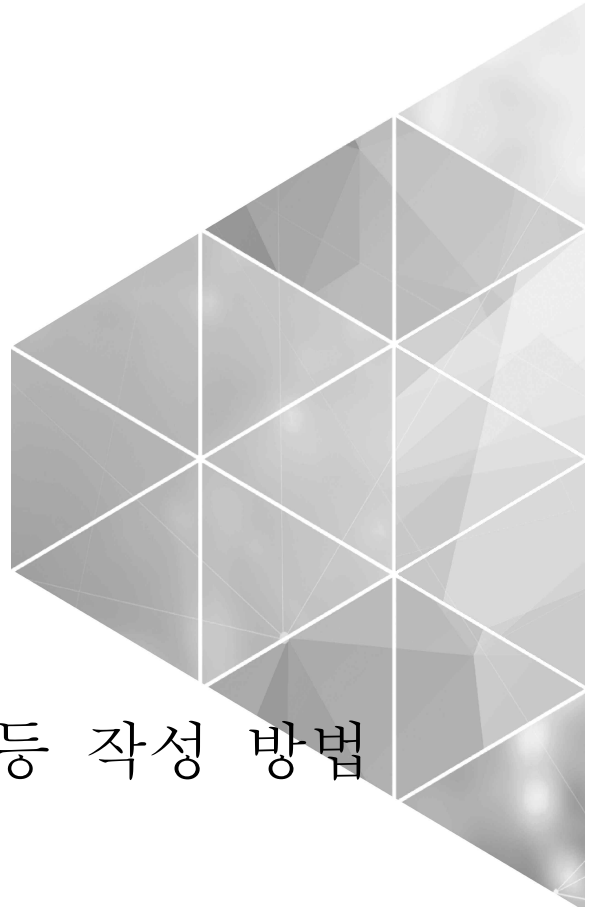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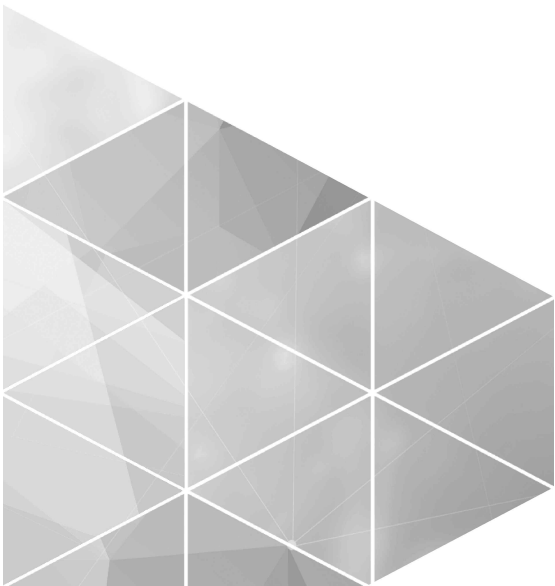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 방법



제3장 정산보고서 등 작성 방법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와 심사·확정(최적화추진단)의 작성방법은 아래의 작성법(예시)을 참고

※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금, 지방비,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3.1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지자체작성)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m ³)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	지방비 ㉡	원인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16.5.17~'18.4.28 ('18.4.28)			1,500	3,500		

※ 확정된 총사업비 중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민간자본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 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5,000,000,000	1,500,000,000	30.0	3,500,000,000	1,750,000,000	1,750,000,000			
2015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16	1,565,000,000	500,000,000	30.0	1,065,000,000	532,500,000	532,500,000			
2017	1,870,000,000	500,000,000	30.0	1,370,000,000	685,000,000	685,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합계	총공사비					조사· 용역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4. 세부지출내역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단위 : 원)

구분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금액	채주	비고
공사비	2016-06-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16-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16-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16-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16-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17-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17-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17-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17-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OO전기(주)	
	2017-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OO전기(주)	
	2018-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OO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계비	2016-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7-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리비	2016-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6-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7-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16-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OO	
	2016-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17-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OO	
	2017-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OO	
	2017-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OO	
	2017-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18-05-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OO	
		소 계	4,000,000		
	집행내역 총계		4,958,000,000	-	

5.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6.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7. 복합사업의 사업비 분계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식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특이사항
공사비	준공내역의 금액			
시설별 비율	$A' = A / (A+B)$	$B' = B / (A+B)$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D_B = B + B' \times C$		
시설별 설계비(E)	$E_A = E \times A'$	$E_B = E \times B'$		
시설별 감리비(F)	$F_A = F \times A'$	$F_B = F \times B'$		
시설별 용역비(G)	$G_A = G \times A'$	$G_B = G \times B'$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 = A / (A+B)$ 50억/60억=83.3%	$B' = B / (A+B)$ 10억/60억=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50억+20억×83.3% =66.67억	$D_B = B + B' \times C$ 10억+20억×16.7%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_A = E \times A'$ 2억 × 83.3% = 1.67억	$E_B = E \times B'$ 2억 × 16.7% = 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_A = F \times A'$ 4억 × 83.3% = 3.33억	$F_B = F \times B'$ 4억 × 16.7% = 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 총사업비 80억인 경우 소각 또는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소각시설(A, 50억) 생활자원회수센터(B, 10억)로 구분하고, 도로, 건축물 등 공동 사용시설(C, 20억)은 공통시설로 분리하여 소각(A)와 생활자원회수센터(B) 만으로 비율을 산정(83.3% : 16.7%)

※ 1.공동시설의 금액을 시설별 비율(A', B')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산출
2.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총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리

3.2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최적화추진단 작성)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기술검토 의견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치	사업규모	추정 총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16.5.17~'18.4.28 (18.4.28)			5,000	1,500	3,500		

2.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년도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계	5,000,000,000	1,500,000,000	3,500,000,000	0	0	0
2015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16	1,565,000,000	500,000,000	1,065,000,000	0	0	0
2017	1,870,000,000	500,000,000	1,370,000,000	0	0	0

3. 항목별 지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조사용역비	시설부대비
지출액	4,958,000,000	4,330,000,000	174,000,000	450,000,000	0	4,000,000

4. 사업지출내역 검토

(단위 : 원)

구분	정산금액 지출내역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지출액 총계 (A)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산액 소계 (B)	4,958,000,000	1,187,400,000	2,770,600,000	1,000,000,000	
정산제외액 소계 (C)=(A)-(B)	0	0	0	0	
○시설부대비 등					

5. 정산검토 결과

(단위 : 원)

구분	추정사업비		지출액 ^㉔			미지출액 ^㉕ E=A-B	국고반납액 ^㉖ F=D+E	
	당초 ^㉑	재산정 ^㉒	계 ^㉓ B=C+D	정산액 ^㉗ C	정산제외액 ^㉘ D			
총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4,958,000,000	4,958,000,000	0	-		
국고	소계(b)	1,500,000,000	1,200,000,000	1,187,400,000	1,187,400,000	0	312,600,000	312,600,000
	보조율(%)	30%	30%	30%	30%			
지방비	소계(c)	3,500,000,000	2,800,000,000	2,770,600,000	2,770,600,000	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㉔가 사업비^㉑ 보다 클 경우 미지출액^㉕는 0

※ 원인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국고지원대상)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한 후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고, 지방비 등 재산정

6. 검토의견

○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정사업비는 5,000백만원이고 이 중 지출금액은 4,958백만원, 미지출금액은 312백만원임.
 - 정산요구액은 미지출금액의 국고부분 312,000,000원 임

- 덧붙임 : 1. ‘○○시(군·구) ○○시설 ○○사업’ 지출내역 1부.
 2. ‘○○시(군·구) ○○시설 ○○사업’ 정산 증빙서류 1부(별도송부). 끝.

<붙임>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금액	채주	비고
공사비	2016-06-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16-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16-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16-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16-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17-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17-05-24	3차년도 제2회 기성금	300,000,000	(주)OO건설	
	2017-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17-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OO전기(주)	
	2017-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OO전기(주)	
	2018-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OO전기(주)	
		소 계	4,330,000,000		
설계비	2016-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7-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리비	2016-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6-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7-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16-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OO	
	2016-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17-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OO	
	2017-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OO	
	2017-07-30	감독관 출장비(업무협의)	500,000	이OO	
	2017-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18-05-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OO	
		소 계	4,000,000		
		지출내역 총계	4,958,000,000	-	

※ 세부지출내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사업비, 집행액, 정산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출 예시(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① 추정사업비(A)가 지출액(B) 보다 작고, 정산액(C) 보다 큰 경우

구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출액			미지출액 (E)=(A)-(B)	국고반납액 (F)=(D)+(E)
		당초(A)	재산정(A')	계(B)=C+D	정산액(C)	정산제외액(D)		
총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4,900,000,000	300,000,000	-	
국고	소계(b)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30,000,000	300,000,000	330,000,000
	보조율(%)	30%	30%		30%			
지방비	소계(c)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730,000,000	27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B)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B) 국고부분을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B)의 국고가 추정사업비(A)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A) 국고= 지출액(B)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A)의 국고 12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B) 국고는 12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C)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C) 국고를 산출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산출

② 추정사업비(A)가 지출액(B), 정산액(C) 보다 작은 경우

구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출액			미지출액 (E)=(A)-(B)	국고반납액 (F)=(D)+(E)
		당초(A)	재산정(A')	계(B)=C+D	정산액(C)	정산제외액(D)		
총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5,200,000,000	5,100,000,000	100,000,000	-	
국고	소계(b)	1,5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	300,000,000	-
	보조율(%)	30%	30%	-	-	-		
지방비	소계(c)	3,500,000,000	2,800,000,000	3,000,000,000	2,900,000,000	10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B)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B)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B)의 국고가 추정사업비(A)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A) 국고= 지출액(B) 국고 - 4,2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6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A)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지출액(B)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 정산액(C)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C)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B)의 국고가 추정사업비(A)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A) 국고= 지출액(B) 국고 - 4,1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230,000,000원 산출
 → 추정사업비(A)의 국고 1,200,000,000원을 초과, 정산액(C) 국고는 1,200,000,000원으로 함

③ 추정사업비(A')가 지출액(B), 정산액(C) 보다 클 경우

구 분 (단위:원)		추정사업비		지 출 액			미지출액 E=A-B	국고반납액 F=D+E
		당초(A)	재산정(A')	계(B=C+D)	정산액(C)	정산제외액(D)		
총계(a=b+c+d+e+f)		5,000,000,000	5,000,000,000	4,900,000,000	4,800,000,000	100,000,000	-	
국 고	소 계(b)	1,500,000,000	1,200,000,000	1,170,000,000	1,140,000,000	30,000,000	330,000,000	360,000,000
	보조율(%)	30%	30%	30%	30%	30%		
지 방 비	소 계(c)	3,500,000,000	2,800,000,000	2,730,000,000	2,660,000,000	70,000,000	-	
	시·도비	1,750,000,000	1,400,000,000					
	시·군비	1,750,000,000	1,400,000,000					
민간자본(d)								
원인자부담금(e)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타(f)								

- 지출액(B)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출액(B) 국고를 산출
 * 단, 산출된 지출액(B)의 국고가 추정사업비(A')의 국고를 초과할 경우, 추정사업비(A') 국고= 지출액(B) 국고
 - 3,900,000,000원(원인자부담금 제외) * 30% = 1,170,000,000원
- 정산액(C)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액(C) 국고를 산출
 - 3,800,000,000원 * 30% = 1,140,000,000원
- 정산제외액(D) : 추정사업비(A')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제외액(D) 국고를 산출
 - 100,000,000원 * 30% = 30,000,000원

나. 보조금 확정

1) 확정내역

(단위 : 원, %)

투자액		보조금 교부율 (B)	국고보조금 교부액 (C)	국고보조금 소요액 (A×B)	국고보조금 확정액 (D)	집행잔액 (C-D)
집행실적 보고액	심사액 (A)					
				0		

2) 환수액 산정

○ 환수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총 발생이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원

○ 발생이자 계산 : 다음의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발생이자를 반납한다.

① 보조금 교부로부터 집행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일까지의 발생이자

② 미집행액의 거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

③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의 발생이자

(간접보조사업자(위탁기관)의 발생이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국고 보조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교부받은 부처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중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사례 참고

<붙임> 00000 00시설 설치사업

세부심사내역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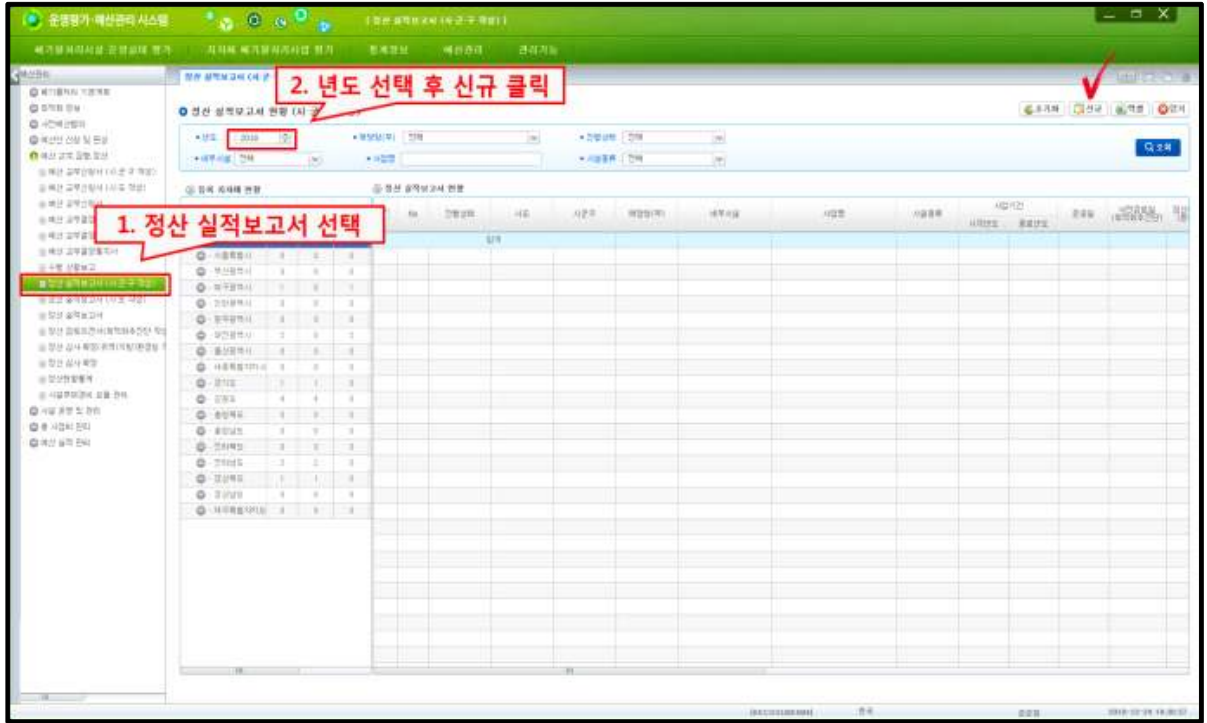
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합 계					
2017-08-06	공사 비	건설공사 1차공사 1회 기성대가	0000	000,000,000	000,000,000
2017-12-20		전기공사 1회 기성대가	“		
2017-12-21		건설공사 1차공사 2회 기성대가	“		
2018-02-22		건설공사 1차공사 준공대가			
2018-06-24		건설공사 2차 준공대가			
2018-06-24		전기공사 준공대가			
2018-06-24		정보통신공사 준공대가			
2017-11-09		폐기물처리용역 1회 기성대가	0000		
2018-05-09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대가	“		
공사비 소 계					
2017-04-28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재(이형철근) 조달대금	0000		
2017-05-06		관급자재(H형강) 조달대금	“		
2017-05-06		관급자재(철강빔) 조달대금	“		
2017-06-01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08-0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09-02		관급자재(공기압축기 등) 조달대금			
2017-10-13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0-26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0-28		관급자재(스팀보일러) 조달대금			
2017-11-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7-11-25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02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연수화장치) 조달대금			
2017-12-14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7-12-16		관급자재(공기압축기) 조달대금			
2017-12-24		관급자재(재처리반출설비) 조달대금			
2018-01-19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공기청정기) 조달대금			
2018-03-08		관급자재(레미콘) 조달대금			
2018-03-17		관급자재(시멘트)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2018-03-22		관급자재(AL창호) 조달대금			
2018-04-07		관급자재(냉난방기)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일 자	적 요		채 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비 고
2018-05-09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5-09		관급자재(연수화장장치) 조달대금				
2018-05-1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1		관급자재(컨베이어벨트) 조달대금				
2018-06-02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조달대금				
2018-06-03		관급자재(공법사 관급분) 조달대금				
관급자재비 소 계						
2017-08-22		소각시설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달수수료 지급	“			
2017-02-27	설 계 비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12-17		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2017-02-27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0000기술			
설계비 소 계						
2018-10-22	감 리 비	위탁수수료(1~3차분)	0000			
2017-05-04		위탁수수료(4차분)	0000			
2017-07-29		위탁수수료(최종분)	0000			
소 계						
2017-10-16	조 사 용 역 비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선급금지급	0000			
2017-12-26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0000			
조사용역비 소 계						
2018-01-25	시 설 부 대 비	한전수탁공사비	0000			
2018-02-24		한전 사용전검사비	0000			
2018-02-27		감독관 출장여비	000			
시설부대비 소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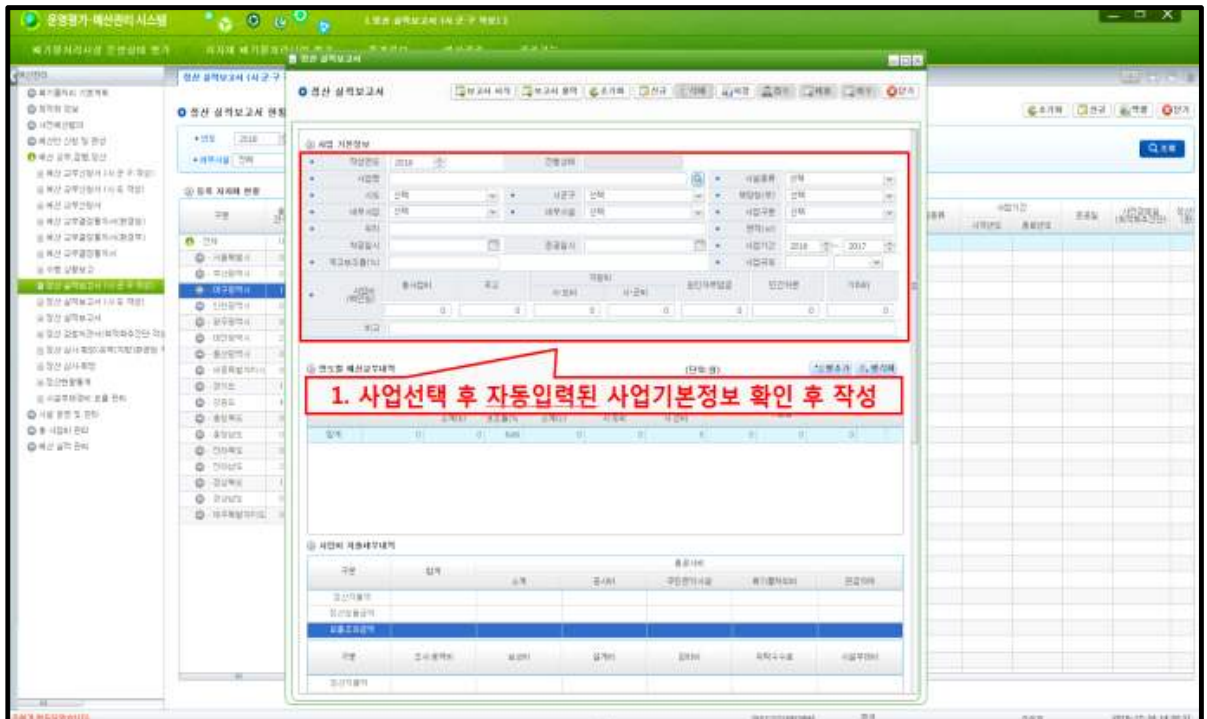
3.4 예산관리시스템 정산 실적보고서 제

①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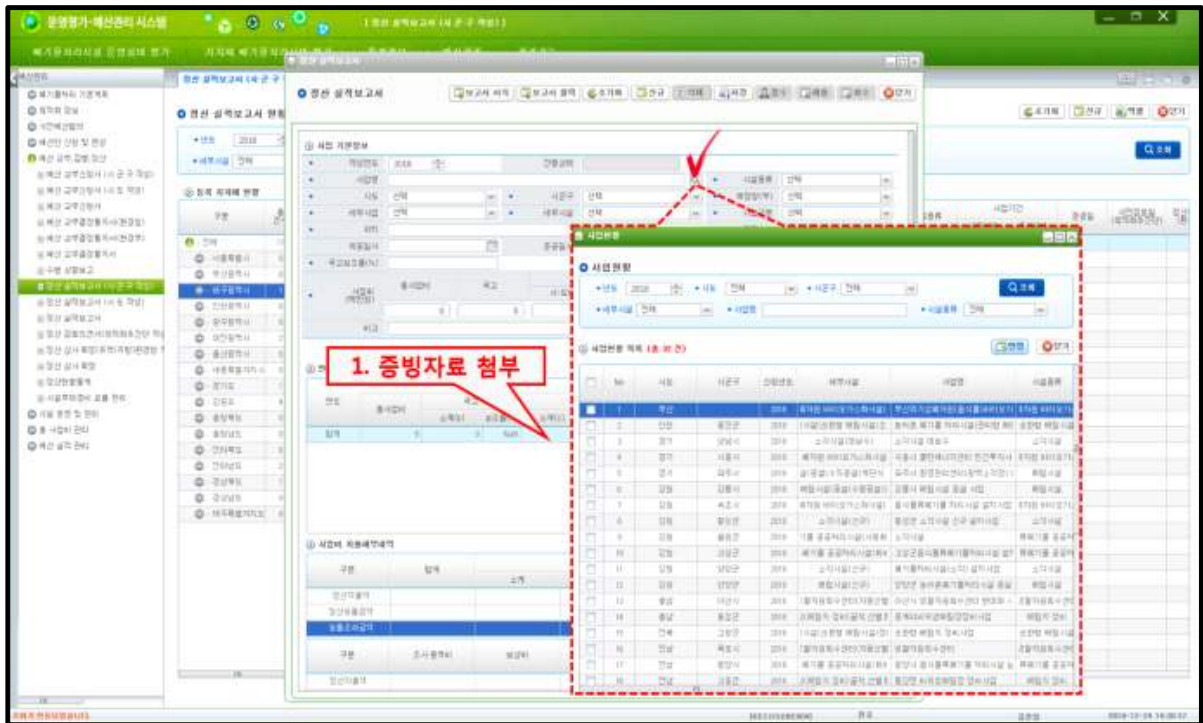
- STEP 1. 정산 실적보고서 작성 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보고서 선택



- STEP 2. 사업명 선택하여 자동입력된 기본정보 확인 후 작성



- STEP 2-1. 총사업비 승인문서, 국고교부통지서,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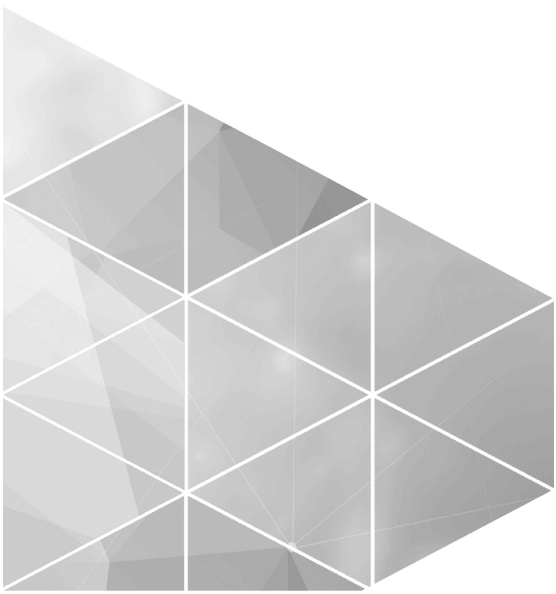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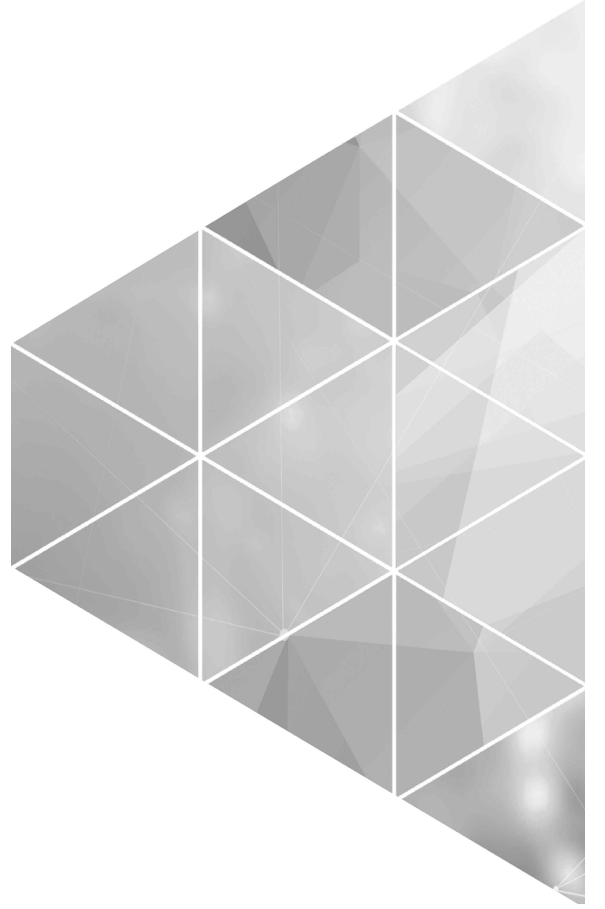
※ 구체적인 예산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예산관리시스템 문의처 : 032-590-4554(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4장

Q & A



제4장 Q & A

Q1

2개 이상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별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턴키 공사 등 일괄공사로 사업이 진행되어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 사업과 통합 공사이므로 해당 공사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공사 원가계산서 등과 같이 **설계내역서 상의 구분 내역을 근거로 계산된 공사비 비율 산출자료를 정산자료 제출 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출된 금액마다 집행금액과 각 사업별 금액을 모두 구분하여 목록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정산예시입니다.)

일자	적요	채주	집행실적 보고금액		집행실적 심사결과
2004.09.23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사 (2차) 선급금	(주)○○	지급금액	912,620,000	766,899,148
			소각	766,899,148	
			재활용	145,720,852	

2개 이상의 사업일 경우 분계 (예시)

시설구분	소각시설 (A)	생활자원회수센터 (B)	공통시설 (C)	계
공사비	50억	10억	20억	80억
시설별 비율	$A' = A / (A + B)$ 50억/60억 = 83.3%	$B' = B / (A + B)$ 10억/60억 = 16.7%		100.0%
시설별 공사비(D)	$D_A = A + A' \times C$ 50억 + 20억 × 83.3% = 66.67억	$D_B = B + B' \times C$ 10억 + 20억 × 16.7% = 13.33억		80억원
시설별 설계비(E) (설계비 2억원 가정)	$E_A = E \times A'$ 2억 × 83.3% = 1.67억	$E_B = E \times B'$ 2억 × 16.7% = 0.33억		2억원
시설별 감리비(F) (감리비 4억원 가정)	$F_A = F \times A'$ 4억 × 83.3% = 3.33억	$F_B = F \times B'$ 4억 × 16.7% = 0.67억		4억원
합 계	71.67억원	14.33억원		86억원

Q2

위탁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는 위·수탁 수수료가 표기된 **협약서, 위탁기관에서 집행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3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거나 준공시기가 오래된 사업의 제출 서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하여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Q4

총사업비 결정통보 후 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 비목간 증감금액을 조정하여 당초 총사업비와 다르게 집행금액을 정산해도 되는지요?

A 「총사업비관리지침」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Q5

시운전비로 사용된 공공요금은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시운전 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기타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유틸리티 비용**은 증빙서류 (공공요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보고서 및 시운전결과보고서, 준공 내역서, 공공요금 납부 지출결의서 등)를 제출 시에는 공사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6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와 다르게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어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고,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진 경우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을 때 국고 반납액은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A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지방비 추가투입으로 변경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총사업비 결정통보서에 따른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집행 잔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Q7

정산보고서 작성 시 정산반납액에 적용하는 국고지원비율은?

- A 정산반납액은 총예산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정산 대상이 아닌 보상비 등을 제외한 국고지원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합니다.

<표> 정산보고서 중 국고지원비율 작성방법 (예시)

구 분	총예산	정산지출액	정산반납액
총계(a=b+c)	4,800,000,000	4,658,000,000	
국 고	소계(b)	1,440,000,000	42,600,000
	보조율(%)	30%	30%
지 방 비	소계(c)	3,360,000,000	
	시·도비	1,800,000,000	
	시·군비	1,560,000,000	

Q8

준공금 인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 A 준공검수조서, 최종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준공금에 대한 인정이 불가합니다. 최초 선급금으로부터 기성금까지의 증빙서류(기성검사조서, 계약서 등)가 완비된 경우에는 기성금까지의 지급액이 인정됩니다.

Q9

공사비 중 조사용역비와 시설부대경비의 설계용역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사용역비**에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가 포함되고 **설계용역비**에는 입지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설계관련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Q10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 또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 2중으로 투입된 설계비는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A **설계 경제성(VE) 검토비용** 및 변경된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되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Q11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감액정산을 반영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공사로부터 **반환된 지체상금이 정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감액정산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집행내역 중 위탁수수료는 시설부대비로 분류됩니까?

A 위·수탁수수료의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 시 집행내역을 **감리비(위탁수수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각각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Q13 기존 소각로 철거 및 폐자재 및 잡철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 정산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폐자재 및 잡철 **감정평가용역**에 따른 내역은 국고보조금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Q14 준공일의 기준은?

A **최종계약서(또는 준공검사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혹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Q15 정산보고서(지자체) 작성시 연도별 재원별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작성하나요?

A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닌 **연도별 교부된 국고 및 최종 편성된 지방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국고교부통지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16 총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대비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국고지원비율이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방법은?

A **예산집행실적**은 실제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예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연도별 국고보조율은 집행 연도 **국고보조금결정통지서**에 따른 보조율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총예산 (A)	예 산 집 행 실 적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a=b+c)	231,000,000	221,936,480	120,000,000	75,200,000	26,736,480	
국 고	소계(b)	69,300,000	66,580,944	36,000,000	22,560,000	8,020,944
	보조율(%)	30%	30%	30.00%	30%	30%
지 방 비	소계(c)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도비	161,700,000	155,355,536	84,000,000	52,640,000	18,715,536
	시·군비	-	-	-	-	-

Q17

설치검사수수료와 사용 전 검사수수료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수수료는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전 검사수수료 또한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결의서 및 수납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토지 매입과 보상에 관련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토지, 영농, 분묘 등의 보상금 및 관련 수수료, 농지·산림자원조성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은 정산 제외 대상입니다. 보상비 지급 용도의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또한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 시공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은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19

자재대금 정산 시 계약서 및 검수조서 자료를 분실하여 조달청에서 발생한 납입고지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정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가 지출결의서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계약서와 물품검수조서를 대체하여 정산 인정 가능합니다.

Q20

시설 부대비용 중 방한화, 안전화 등 피복비, 사업관련 심의비용, 회의비는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까?

A 감독 등 피복비와 심의 수당 및 회의 비용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사무용품 구입, 기공식 및 준공식 관련 비용, 법률 자문비용, 신문광고료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Q21 장비구입비가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비구입비는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대상 아님.** 단, 공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인정하나 보험료, 등록비 등은 불인정

※ 공정의 일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 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또는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등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장비구입비	공정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투입설비를 대체하는 굴삭기, 선별시설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지게차)	쓰레기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암롤BOX 청소차, 법면이나 주변정리를 위한 굴삭기 또는 불도저 등

Q22 모든 부담금 지출내역은 정산인정이 가능합니까?

A 모든 부담금이 정산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등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토지매입관련 비용으로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전기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정산 인정 대상입니다.

Q23 공사비 중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정산인정 가능한가요?

A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측량**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4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에 대해 정산 인정됩니까?

A 총사업비 결정통보 이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감되어 변경한 사항만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결정통보서 및 설계변경사유를 포함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 조정결과 통보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완료한 사항은 정산 불인정대상입니다.**

Q25 재원협의 시 지방비로 지출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되는지?
 (상·하수도 관로 인입, 진입도로 건설, 소각로의 압축포장설비, TMS 전광판 설치 등)

A 재원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산이 실시되므로, **재원협의 조건 및 조치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지출하기로 협의된 사항은 국고보조금 정산 인정이 불가** 합니다.

Q26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재산정후 지원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10백만원)이 발생한 경우(예시)

사업비로 총당된 부담금을 우선순위로 집행(480백만원-210백만원)한 후, 지방비 보조율(70%) 금액 집행에 따른 국고지원금액 정산

구 분	총예산 (A)		예산 집행 실적	국고 반납액		
	당초사업비	재산정사업비	정산지출액			
총사업비	총계(a=b+c)	480,000,000	270,000,000	268,000,000		
	국고	소계(b)	144,000,000	81,000,000	80,400,000	63,600,000
		보조율(%)	30%	30%	30%	
	지방비(c)	336,000,000	189,000,000	187,6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10,000,000	210,000,000	210,000,000		

※ 증빙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대장, 특별회계 관리대장

Q27

정산사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12년까지 232억원을 납부받고, 총사업비(719억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13년 정산 시 부담금(232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산하여 감사 지적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부담금	민간투자비	감사시 지적
정 산	<u>71,948,000</u> (①) (100%)	<u>26,533,000</u> (②) (36.88%)	-	45,415,000 (63.12%)	과다교부 <u>8,568,880</u> [산출식] ②-③
감사시 재산정	71,948,000 (100%)	<u>17,964,120</u> (③) (①-④)×36.88%	<u>23,238,345</u> (④)	30,745,535	

Q28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 받아 **특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후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Q29

정산사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운영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부적정 사용

A A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받아, 소각시설 **운영비**로 사용, B시는 가연성연료화시설 탈수기교체 등 **대수선비**로 사용, C시는 신규사업 예정인 소각시설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음식물류)**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Q30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촉구 등 미조치 사례

A A시는 사업시행자인 ○○사가 주택조성사업(143만㎡)을 하면서 착공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착공전에 제출하고,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Q3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부과하여 재정손실을 가져온 사례

A A시는 택지조성(114만㎡)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면제,

B시는 개발사업(52만㎡)을 ○○건설사와 공동시행자로 개발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C시 청소행정과는 개발사업(42만㎡)을 직접 시행하면서 부담금을 면제,

D시 청소과는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사업(40만㎡)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기관협의 시 부담금 해당 없음으로 회신, 미부과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75호) 별표 2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로 분류

Q3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A A시는 관내 5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에서 정한 소각시설 부지면적 산정 기준인 **1톤당 200㎡**를 따르지 않고 **150㎡~300㎡**까지 다르게 적용하여 불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Q33

민자사업에서 전체 집행금액이 국고 지원금액을 초과합니다. 집행증빙내역은 국고 지원금액 부분만 제출해도 정산 인정이 가능합니까?

A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방비)에 민간자본**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총사업비의 지출증빙**으로 정산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고 지원부분 뿐만 아니라 민자 지출부분, 지방비 지출부분까지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SPC로 집행한 지출내역**'이 아니라 '**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4

민자사업의 경우, 최초사용료 산정 등을 위하여 지자체 사업비 정산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이것과 국고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정지원금의 집행보고 및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 **사업비 정산**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 정산에서는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5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영업준비금 등도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사업타당성분석비,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은 국고 인정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전액 민자 집행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민자에서 모두 집행하였다더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36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및 공사 진행 중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 과정 및 최종 승인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총사업비 결정(조정) 통보 문서가 필요합니까?

A 정산을 위하여 실시협약(최초 및 변경, 최종), 최초 총사업비 결정 통보, 총사업비 조정 통보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②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37

소액의 물품구매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승낙사항(「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해야 한다)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 바, 그 승낙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내용으로 작성하여 구비해 놓아야 하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38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함에 따라 검수(검사)조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의 경우, 검사담당자가 소액 또는 세부적인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검수(검사)조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집행내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한 근거가 되는 자료(내부결재문서 등)**를 제출하셔야 정산인정이 가능합니다.

Q39 사업 목적에 맞는 여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여비의 정산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명 및 출장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장보고서, 결의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정산 인정	정산 불인정
시설부대비 (여비)	사업 진행을 위한 여비 자료수집, 시설견학, 물품검수, 업무협의 현장감독	해외출장, 정산제외대상(용지보 상비등) 관련 여비, 본 사업과 관계없는 출장여비

Q40 시설부대경비의 효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정산 불인정이 될 수 있나요?

A 시설부대경비의 효율산정항목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효율은 **해당연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르며 사업에 집행된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효율과 공사비의 곱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산 불인정**됩니다.

< 직 선 보 간 법 >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¹ : 큰금액, x²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¹ : 작은금액요율, y² : 큰금액요율

※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신규사업 해당년도('18년 신규사업은 '18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요율을 따름)]

Q41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효율 초과

A	지자체	사업기간	공사비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A시	12.03.15~ 18.11.15.	3,628,940,350원	192,907,000원	60,608,540원	34,103,740원

※ 시설부대비 : 정산제외항목금액 21,043,000원 포함
 → 2012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효율 적용

<시설부대경비 효율> (단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0 억 원 까 지	1.79	3.16	1.66	0.63
20 억 원 까 지	1.45	2.91	1.53	0.36
30 억 원 까 지	1.40	2.80	1.48	0.36
50 억 원 까 지	1.37	2.75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34	2.67	1.41	0.25

○ 설계비 : 실시설계의 경우 실시설계비 효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효율과 실시설계비 효율**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 x : 3,628,940,350원, x¹ : 50억, x² : 30억
 y¹ : 1.40 + 2.80 = 4.2%, y² : 1.37 + 2.75 = 4.12% ∴ y : 4.174%

∴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효율금액 : 3,628,940,350 × 0.04174
 = 151,471,970원까지 **정산인정**

A시 기본 및 실시설계 정산제외 비용 : 192,907,000원 - 151,471,970원
 = 41,435,030원 **정산불인정**

○ 감리비 : “공사감리”란 비상주감리

→ x : 3,628,940,350원, x¹ : 50억, x² : 30억
 y¹ : 1.48%, y² : 1.45% ∴ y : 1.470%

∴ A시 공사감리비 비용 : 3,628,940,350 × 0.01470
 = 53,345,423원까지 **정산인정**

A시 공사감리비 정산제외 비용 : 60,608,540원 - 53,345,423
 = 7,263,117원 **정산불인정**

Q41 정산사례 : 시설부대경비 효율 초과 (계속)

A ○ 시설부대비 :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공사 감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x : 3,628,940,350원, x^1 : 50억, x^2 : 30억

y^1 : 0.36%, y^2 : 0.27% ∴ y : 0.331%

∴ A시 시설부대비 비용 : 3,628,940,350 × 0.00331

= 12,011,792원까지 **정산인정**

A시 시설부대비 정산제외비용 : 34,103,740원 - 21,043,000원 - 12,011,792원

= 1,048,948원 **정산불인정**

※ 정산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산제외항목 금액(21,043,000원)을 먼저 제외하고 효율에 의해 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Q42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최초 중앙관서의 장과 총사업비를 55억원으로 확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면서 사업물량과 설계확정으로 **총사업비가 53억원으로 변경** 되었음에도,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43 낙찰차액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은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발주금액을 156억원에 대한 계약금액 125억원의 차액인 **낙찰차액 31억원이 발생** 하였는데도 **총사업비 조정(감액)** 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총사업비	국고	낙찰차액	감사시 지적
정 산	<u>156억원</u> (①) (100%)	<u>78억원</u> (②) (50%)	-	과다교부 <u>15.5억원</u> [산출식] ②-③
감사시 재산정	156억원 (100%)	<u>62.5억원</u> (③) (①-④)×50%	<u>31억원</u> (④)	

Q44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공사비 **낙찰차액이 10억**이 발생되자,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6억원을 공사의 보상비나 관급자재비 등으로 집행하여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45 중앙관서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 부적정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주민의견 수렴여부 등 당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연도 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K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연·중단이나 사업포기** 등으로 보조금 726억원이 **장기간 사장되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여부,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Q46 중앙관서 국고보조금액 확정 정산지연 사례 (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A시가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로부터 4년 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97개 보조사업(총사업비 830,063백만원, 보조금 552,532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여 동안 **보조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 보고서를 받으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47 지자체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정산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보조사업(총사업비 300,469백만원, 보조금 235,100백만원)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4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적보고서(정산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Q4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사례

A A부는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A시 ○○설치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을 반납되지 않고 있는**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46개 보조사업(총사업비 716,742백만원, 보조금 493,749백만원)에 대하여 총 112억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장기간 반납되지 않고** 있어 감사 지적

※ 근거법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Q49 위탁 대행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조치 부적정 사례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기관인 B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587,563,357원을 반납받고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는 등 69개 지방자치단체의 9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 137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감사지적

구 분	교부액	집행일	이자액	감사시 지적
A부처		'18.1.10		미반납 이자 46,986,293원
B지자체	25억	'18.2.15	4,931,500원 (1.10~2.14)	
C위탁기관	25억	'18.7.10	19,863,013원 (2.15~7.9)	
D시공사	25억	'18.12.20	22,191,780원 (7.10~12.19)	

Q50 다음연도 완공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를 언제 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안신청 시 사업기간을 '14년부터 ~'18년까지로 계획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할 경우, 신청가능한 시기는 **'17년 2월말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중앙관서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Q51 편익시설 설치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A A시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래사용 목적으로 주민지원기금 46억원을 조성(예치) 하였다가 정산 시 국고보조금(보조율 50%) 23억원을 반납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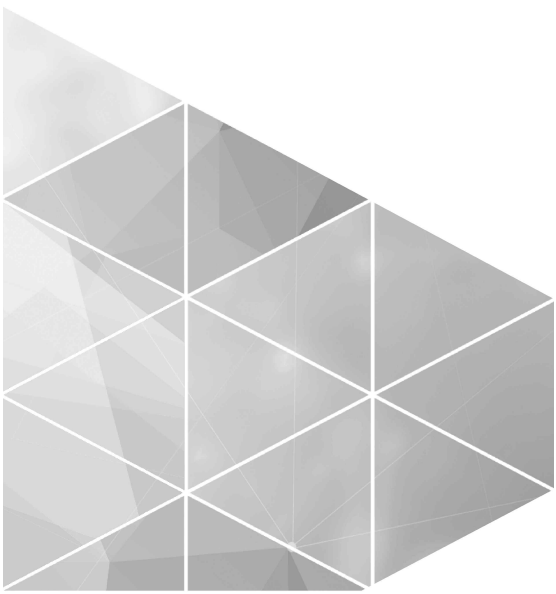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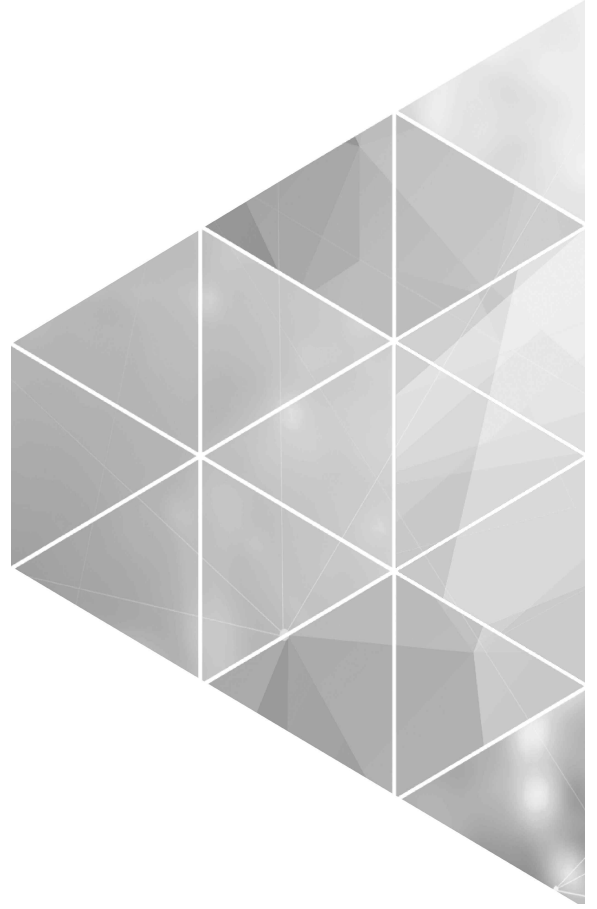
Q52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에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한 국고보조금이 15억을 넘을 경우 개소당 15억 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국고 반납액은 총 지출금액의 70%(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가 15억보다 적을 경우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지출금액의 70%가 이미 1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지출금이 총 사업비보다 적더라도 국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제5장

서 식



제5장 서 식

【서식1】 국고보조금 실적(정산) 보고서

국 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m ³)	총사업비			
				국 고 ㉠	지방비 ㉡	원안자 부담금 ㉢	민간 자본 ㉣

※ 확정된 총사업비 중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민간자본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안자 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2012									
2013									
2014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합계	총공사비					조사· 용역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4. 세부지출내역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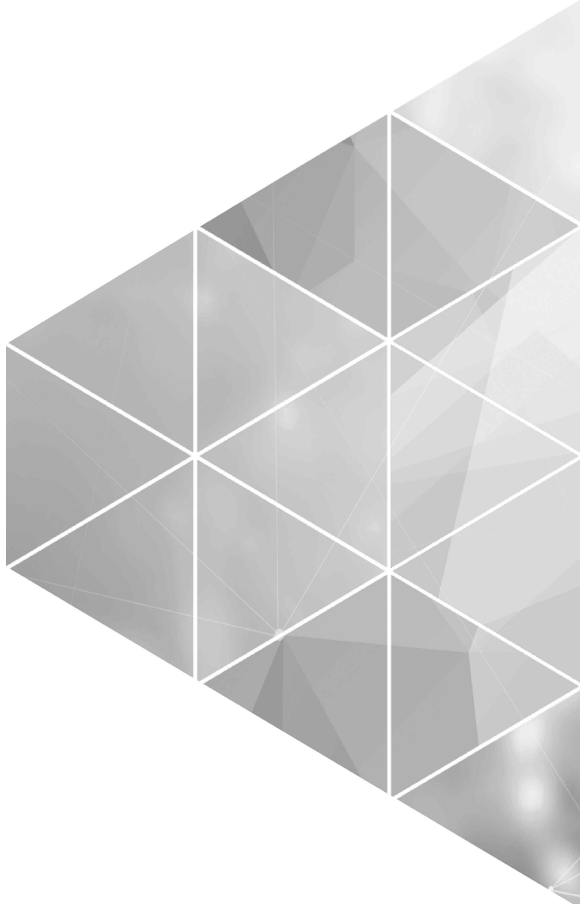
구분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금액	채주	비고
공사비					
		소 계			
설계비					
		소 계			
감리비					
		소 계			
시설부대비					
		소 계			
집행내역 총계					

5.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6. 정산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1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2	총사업비 승인 문서		
3	사전예산협의 검토 결과서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5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내용		
6	복합사업(공사나 용역을 타사업과 통합 발주한 경우)사업비 분계근거		
7	도급공사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보고서, 도면, 내역서	
8	폐기물처리용역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9	설계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준공내역서	
10	감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최종계약서	
		준공검수조서	
		준공정산합의서	
		위수탁 협약서(위탁사업일 경우)	
11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증빙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12	관급자재비	지출결의서(MIS 또는 e-호조)	
		계약서	
		물품검수조서(납입고지서)	
13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장	
		고지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붙임 자료

붙임 1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
서류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
단가

붙임 4 : 시설부대경비 요율

붙임 5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붙임 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 1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서식 #1), 제출서류 목록표
- ② 지출결의서(지출일 표기, 지출담당자 서명·날인) 또는 재정집행시스템 전산자료 (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원본대조필 표기)
- ③ 계약서

공통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	-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부대비를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 2개 이상의 용역을 통합하여 진행	- 정산대상과 비대상 용역으로 분계하여 제출 ; 분계한 근거 제출, 모두 정산 대상 또는 정산제외 일 경우 근거자료는 미제출
사업계획	
○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신청	- 사업계획서 ; 사업규모, 소재지, 시설연계·광역 처리 여부 ; 사업비요구액(세부내역), 국고보조율(%) - 인허가 및 사전예산협의 결과통보서 ; 사업개요 및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국고보조금 신청·반영	
○ 국고 신청	- 국고보조금신청서(필요시)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확인(사업계획서 참조)
○ 국고 교부 반영 및 확정	- 국고 교부통지서(발신처: 환경부 혹은 해당 시·도) ; 확정·교부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확정액, 교부액 비교)
총사업비 변경·조정 (변경·조정 승인 내역이 있을 경우)	
○ 총사업비 변경·조정 신청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신청서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조정신청내역 확인 ; 변경(승인)·조정사유 확인 -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 물가변동 추정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총사업비 변경·조정 확정	- 총사업비 변경(승인)·조정 확정통지서 ; 확정·반영된 총사업비·국고, 조정사유 등

사업위탁대행, 설계, 감리	
○ 사업위탁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협약서 ; 지자체-대행사업자(공단 등 공공기관) 간 위탁체결 내용 ; 위탁기간, 대행사업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등 -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 ; 대행사업비 산정내역 포함된 위탁 관련 공문 등 (대행사업비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 증빙 관련 서류 등) - 사업비지급(계좌) ;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한 내역 ; 위탁대행사업, 공사, 설계, 감리 등 계약액 지급내역
○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계약서 ; 설계대상 소재지, 규모 등 ; 최종계약금액, 결의서 지급금액과 일치 여부 -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 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계약서 ; 지자체-감리업체 간 계약내용(감리기간, 금액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준공검수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시설공사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서 ; 준공일, 준공기간 기본내용, 계약금액 등 확인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시공사의 착공계, 준공계, 준공보고서 등 참고활용, 정산금액에 결의서 및 계약서를 대체 불가

<p>○ 시설준공(사업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 준공기간, 준공규모, 계약변경 세부내역 등 확인 (당초 사업계획내용과 비교, 변경내역 사유 등) - 준공검수조서/준공감독조서 ; 감독자, 검사자 서명 날인(기성검사조서 대체 가능) ; 최종계약금액과 일치 확인 ; 준공내용 :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 등 - 준공사진 ; 준공 전·후 사진비교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p>○ 관급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 지출결의서 금액과 동일한 조달청 납입고지서 및 계약서 - 물품검수조서 ; 담당자(감리자, 담당공무원) 반드시 날인 ; 자재수량, 규격, 단가 표시 - 지출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p>기타(부대비 등)</p>	
<p>○ 시설설치검사(매립, 소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검사서(검사결과서) ; 중간검사, 최종검사 실시여부 ; 세부항목 검사결과 적합(합격)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열균분쇄시설 등) - 설치검사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처리시설별 수수료 및 세부내역
<p>○ 용역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서 ; 용역내용, 용역기간, 완료일 등 ; 당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 첨부(계약 변경 내역 포함) ; 계약변경 - 당초계약에서 최종계약까지 변경내용·금액 확인 * 준공(용역)보고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수조서, 준공감독조서, 지출결의서 등 반드시 제출
<p>○ 담당공무원 등 출장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결의서/여비지급명세서 등 ;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확인(출장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여러 출장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여비지급명세서 등) 별도로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전산 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사업비 정산 및 잔액	
○ 사업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정산서 ;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제출, 당초 예상액과 비교 확인 ; 징수결의서, 관련공문, 통장거래내역 증빙자료 활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서식 적용
○ 사업비잔액(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실적보고서 - 사업비계좌내역 ;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입출 내역 확인(이자, 법인세), 예금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 2-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정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정사업]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1) 소각시설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통합) 3) 생활자원회수센터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 광역시	40	60	
	○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50)	70 (50)	
	○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50	50	
10)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정액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	
1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70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 까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붙임 2-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민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민자사업]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text{국고보조금} = (\text{총사업비} - \text{민자 제안액}) \times \text{국고지원비율}(\%)$
 ※ 다만,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민자	
1) 소각시설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통합) 3) 생활자원회수센터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특별시	50	50	제안액	공동시설만 지원
	○ 광역시	60	40		
	○ 일반 시·군 (광역시설)	50 (70)	50 (30)		
	○ 도서지역	70	30		매립시설은 30%지원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70	30		
10)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정액	잔여 사업비		15억원/개소
1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90	10		15억원/개소 까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고		
소각 시설	신규	30톤/일 이하	5.15억원/톤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30톤/일 초과시설에는 소각여열 회수시설 설치비 포함, 30톤/일 이하시설에서 소각여열회수시설 필요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할증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 - 2계열(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5.09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4.45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4.19억원/톤			
		200톤/일 초과	3.81억원/톤			
	대보수	30톤/일 이하	3.64억원/톤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3.76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3.23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2.96억원/톤			
		200톤/일 초과	2.76억원/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음식물	150톤/일 이하	3.46억원/톤	-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미처리시설 실시설계후 재원협의 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20억원/톤			
		400톤/일 초과	2.94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2.26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00억원/톤			
		400톤/일 초과	1.87억원/톤			
	통합	음식물	150톤/일 이하		3.15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91억원/톤	
		음폐수	400톤/일 초과		2.67억원/톤	
			150톤/일 이하		2.06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1.82억원/톤			
		400톤/일 초과	1.70억원/톤			
생활자원회수센터 (억원/톤)	시설 규모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 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이하	4.91	4.89	3.47		
	10톤/일초과~20톤/일이하	3.80	3.43	-		
	20톤/일초과~30톤/일이하	2.95	2.70	-		
	30톤/일초과~40톤/일이하	2.83	2.20	-		
	40톤/일초과~50톤/일이하	2.71	1.95	-		
	50톤/일초과~60톤/일이하	2.64	1.72	-		
	60톤/일초과~70톤/일이하	2.58	1.60	-		
	70톤/일초과~80톤/일이하	2.53	1.47	-		
	80톤/일초과~90톤/일이하	2.51	1.40	-		
90톤/일초과	2.48	1.34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2억원/톤		- 보관 및 기계적 또는 수선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고	
매립시설	신규	100천m ³ 이하	114.29천원/m ³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m ³)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100천m ³ 초과~150천m ³ 이하	102.87천원/m ³		
		150천m ³ 초과~200천m ³ 이하	82.29천원/m ³		
		200천m ³ 초과~250천m ³ 이하	70.86천원/m ³		
		250천m ³ 초과~300천m ³ 이하	64.01천원/m ³		
		300천m ³ 초과~350천m ³ 이하	59.43천원/m ³		
		350천m ³ 초과~400천m ³ 이하	54.85천원/m ³		
		400천m ³ 초과~500천m ³ 이하	51.42천원/m ³		
		500천m ³ 초과~600천m ³ 이하	48.00천원/m ³		
		600천m ³ 초과~800천m ³ 이하	45.72천원/m ³		
		800천m ³ 초과~1,000천m ³ 이하	40.00천원/m ³		
		1,000천m ³ 초과~2,000천m ³ 이하	34.29천원/m ³		
	2,000천m ³ 초과	28.57천원/m ³			
	증설	수평 증설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수평·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 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
		수직 증설(계단식 확장)	16.76천원/m ³		
매립지 정비	안정화	차수공 적용	579.94천원/m ²	차수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차수공 적용'선정	
		차수공 제외	221.57천원/m ²		
	굴착, 선별 후 이적	10천m ³ 미만	74.18천원/m ³		
		10천m ³ ~100천m ³ 미만	61.64천원/m ³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100천m ³ ~400천m ³ 미만	55.93천원/m ³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400천m ³ 이상	52.50천원/m ³		
	조성	400천m ³ 미만	55.75천원/m ³		
		400천m ³ 이상	52.34천원/m ³		
		모든 시설	34.14천원/m ³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발전시설 (가스터빈)	0.3MWh 이하	39.35억원/MWh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3MWh 초과~0.7MWh 이하	34.04억원/MWh		
		0.7MWh 초과~1.0MWh 이하	29.77억원/MWh		
		1.0MWh 초과	26.58억원/MWh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화 (건식)	50톤/일 이하	2.62억원/톤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미처리시설시설계후 재원협의 시 총사업비 조정 가능	
		50톤/일 초과~100톤/일 이하	2.41억원/톤		
		10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2.29억원/톤		
	퇴비화	150톤/일 초과	2.19억원/톤		
		50톤/일 이하	3.66억원/톤		
		50톤/일 초과~70톤/일 이하	3.25억원/톤		
		70톤/일 초과~90톤/일 이하	2.95억원/톤		
		90톤/일 초과~110톤/일 이하	2.75억원/톤		
		11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2.56억원/톤		
		150톤/일 초과	2.44억원/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회분식)	1.0톤/일 이하 (100kg/hr)	11.89억원/톤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1.0톤/일 초과~3.0톤/일 이하	8.81억원/톤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7.29억원/톤		
	차단형 매립시설	0.2천m ³ 이하	1,631.10천원/m ³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 ² 추가적용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2천m ³ 초과~0.6천m ³ 이하	886.99천원/m ³		
		0.6천m ³ 초과~2.0천m ³ 이하	387.49천원/m ³		
		2.0천m ³ 초과~5.0천m ³ 이하	340.63천원/m ³		
	관리형 매립시설	2천m ³ 이하	521.22천원/m ³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2천m ³ 초과~10천m ³ 이하	433.21천원/m ³		

- 주1)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 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 적용
- 주2) 지하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표준단가의 1.4배를 적용하여 사업비 산정하여 협의하여야 함
- 주3) 설계시 검토된 해당공종 및 공정 공사비 내에서 공법선정 필요

붙임 4 시설부대경비 효율(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직 선 보 간 법 >

※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으로 효율을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미만은 절삭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당해금액, x¹ : 큰금액, x²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효율, y¹ : 작은금액효율, y² : 큰금액효율

○ 건설부문 효율

(단위 :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¹⁾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24	6.49	3.02	1.08
1 억 원 까 지	3.04	6.07	2.85	0.90
2 억 원 까 지	2.42	4.85	2.26	0.72
3 억 원 까 지	2.22	4.43	2.06	0.72
5 억 원 까 지	2.01	4.03	1.89	0.72
10 억 원 까 지	1.77	3.55	1.66	0.63
20 억 원 까 지	1.63	3.27	1.53	0.36
30 억 원 까 지	1.57	3.15	1.48	0.36
50 억 원 까 지	1.54	3.09	1.45	0.27
100 억 원 까 지	1.51	3.01	1.41	0.25
200 억 원 까 지	1.46	2.91	1.37	0.23
300 억 원 까 지	1.45	2.90	1.35	0.23
500 억 원 까 지	1.41	2.84	1.33	0.23
1,000 억 원 까 지	1.40	2.79	1.30	0.23
2,000 억 원 까 지	1.38	2.76	1.28	0.21
3,000 억 원 까 지	1.37	2.72	1.25	0.19
5,000 억 원 까 지	1.34	2.70	1.23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위 기준효율은 ‘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0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효율을 따른다. (‘19년 신규사업은 ‘19년, ‘18년 신규사업은 ‘18년, ‘17년 신규사업은 ‘17년,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지침의 기준효율 적용)

○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91	7.46
2 억 원 까 지	2.76	7.06
3 억 원 까 지	2.60	6.66
5 억 원 까 지	2.47	6.32
10 억 원 까 지	2.30	5.89
20 억 원 까 지	2.18	5.58
30 억 원 까 지	2.05	5.26
50 억 원 까 지	1.95	4.99
100 억 원 까 지	1.81	4.65
200 억 원 까 지	1.72	4.41
300 억 원 까 지	1.62	4.16
500 억 원 까 지	1.54	3.94
1,000 억 원 까 지	1.43	3.67
2,000 억 원 까 지	1.36	3.48
3,000 억 원 까 지	1.28	3.28
5,000 억 원 까 지	1.21	3.11

※ “산업플랜트”란 하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은 건설부문요율 적용)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

공사비 (억 원)	계산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7.67	8.52	9.37
200	6.14	6.81	7.50
300	5.34	5.92	6.52
400	4.81	5.34	5.88
500	4.44	4.94	5.43
700	4.02	4.47	4.91
1,000	3.66	4.06	4.46
1,500	3.20	3.56	3.92
2,000	2.89	3.21	3.53
3,000	2.54	2.82	3.09
5,000	2.15	2.39	2.62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400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740
	200kg/h 이상	1,038
준연속식	200kg/h 미만	1,086
	200kg/h ~ 2ton/h	1,779
	2ton/h 이상	3,433
연속식	200kg/h 미만	2,471
	200kg/h ~ 2ton/h	3,164
	2ton/h 이상	8,932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477
	200kg/h 이상	740
준연속연소식	200kg/h 미만	620
	200kg/h ~ 2ton/h	1,170
	2ton/h 이상	2,066
연속연소식	200kg/h 미만	1,301
	200kg/h ~ 2ton/h	1,862
	2ton/h 이상	4,816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m ² 미만	유	5,281
	무	4,019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이상 ~ 10,000㎡미만	유	11,859
	무	7,44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3,554
	무	8,5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5,248
	무	9,568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7,580
	무	11,375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20,415
	무	13,2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23,250
	무	15,036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6,576
	무	17,299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30,081
	무	19,425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34,490
	무	22,455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40,199
	무	26,097
5,000,000㎡이상	유	47,661
	무	30,801

4.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현행과 같음)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이상 ~ 10,000㎡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13,147
	무	9,433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8,394
	무	13,147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20,986
	무	15,20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23,640
	무	16,800
3,000,000㎡이상 ~ 4,000,000㎡미만	유	26,233
	무	18,928
4,000,000㎡이상 ~ 5,000,000㎡미만	유	28,887
	무	20,986
5,000,000㎡이상	유	31,480
	무	22,580

5.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현행과 같음)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5,000㎡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이상 ~ 10,000㎡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이상 ~ 30,000㎡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이상 ~ 50,000㎡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이상 ~ 100,000㎡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이상 ~ 500,000㎡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이상 ~ 1,000,000㎡미만	유	12,551
	무	7,305
1,000,000㎡이상 ~ 2,000,000㎡미만	유	14,145
	무	8,435
2,000,000㎡이상 ~ 3,000,000㎡미만	유	16,274
	무	9,433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 (단위:천원)
3,000,000m ² 이상 ~ 4,000,000m ² 미만	유	17,798
	무	10,493
4,000,000m ² 이상 ~ 5,000,000m ² 미만	유	19,392
	무	11,553
5,000,000m ² 이상	유	21,521
	무	12,551

6.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500kg/h 미만	692
500kg/h 이상	871

7.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500kg/h 미만	548
500kg/h 이상	692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621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955
	50톤/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302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815
	50톤/일 이상	2,712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846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1,705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520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62
	50톤/일 이상	1,318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현행과 같음)

구 분	용량(단위:톤/일)	수수료 (단위: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513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776
	50톤/일 이상	1,299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087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1,517
	50톤/일 이상	2,241
혐기성분해시설	5톤/일 미만	678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879
	50톤/일 이상	1,412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톤/일 미만	434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635
	50톤/일 이상	1,036

10.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 신 설 >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이상	2,794
준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4,214
	2ton/h 이상	6,386
연속식	200kg/h ~ 2ton/h미만	5,599
	2ton/h 이상	11,885

11.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신 설 >

구 분	용 량	수수료 (단위:천원)
회분식	200kg/h 미만	2,233
	200kg/h 이상	2,496
준연속식	200kg/h 미만	2,376
	200kg/h ~ 2ton/h	3,417
	2ton/h 이상	4,831
연속식	200kg/h 미만	3,057
	200kg/h ~ 2ton/h	4,109
	2ton/h 이상	7,581

-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최초 정기검사는 제외한다)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시설에 대하여 기 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에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 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6. 재검사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와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시설을 2실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 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가산한다.
 8.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9.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한다.
 10.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1.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시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은 별도로 산정한다.
 13.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시 적용된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이상에서 2ton/hr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4.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 지시계·압력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붙임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8., 2017. 7. 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 7. 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 7. 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

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1. 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

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 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 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を受け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 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 1. 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6장 보칙 <개정 2011. 7. 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
-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4.]

제7장 벌칙 <개정 2011. 7. 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 1. 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붙임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0호, 2019. 12. 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

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16. 4. 28.]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4. 28.>

[본조신설 2015. 7. 24.]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7조의2 삭제 <2017. 5. 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3. 1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 ② 운영기관 협의회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중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 5. 8.>]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4. 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8.>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4. 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전문개정 2011. 10. 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8.]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4. 28.>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4. 28.]

부칙 <제30250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